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안 제22조, 별표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1호)

정부는 쪽방촌 정비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

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함.

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5~7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재원조달방안”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세부 토지이용현황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제1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

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개발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 제22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나목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u>재원조달방안</u> 3. (생략) <u><신설></u>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 ----- -----. 1. (현행과 같음) 2. ----- -- <u>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u> 3. (현행과 같음) <u>1의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u>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세부 토지이용현황</u>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u>

	<u>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u>
② (생략)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u>3의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u>
② (생략)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 -----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개발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

1. -----

---- 제외한다)·수소연료공급시설 -----

2. ~ 17. (현행과 같음)

18. -----

-----.

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생략) 나. <u>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u>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라. (생략)	----- -----. 가. (현행과 같음) 나. <u>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u> ----- ----- 다.·라.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9